
유럽화와 스웨덴 노사갈등: 라발 사례를 중심으로*

신 광 영**

본 논문은 라트비아 건설회사와 스웨덴 건설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인 라발 사례(Laval case)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유럽 시장통합의 추세와 스웨덴 국내 노사관계 제도 간의 갈등을 분석한다. 라발 사례는 임시파견노동자 고용을 둘러싼 유럽연합의 법이 스웨덴의 노사관계 모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라발 사례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간의 법적 혹은 제도적인 차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라발 사례는 유럽화에 의한 시장통합과 유럽화에 부채한 사회적 유럽 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점을 논의한다.

주제어: 라발, 임시 파견노동자, 스웨덴 노사관계, 유럽연합, 소셜 덤핑

* 이 논문은 2015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1. 문제제기

1995년 1월 1일 스웨덴의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적 차원의 세계화 현상이자 스웨덴의 유럽화의 일환이었다.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골간을 구성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법과 제도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03년 스웨덴의 유로화 가입 국민투표에서 유로화 가입이 부결되면서, 유로화로의 화폐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스웨덴 경제는 유럽연합이라는 단일한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었다.¹⁾

유럽연합 가입은 스웨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 내 외국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스웨덴과는 다른 기업 규제나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기업들의 활동이 갈등을 낳고 있다(Woolfson, Thörnqvist and Sommers, 2010). 또한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노동자들은 분절된 노동시장 하에서 주변적인 노동시장 내 경쟁을 강화시켜,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Thörnqvist, 2015).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스웨덴 노조 조직률을 악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연합 가입으로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가 스웨덴의 집합적 노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집합적 노사관계 제도(스웨덴의 단체교섭, 공동 결정제, 노동법원 등)와는 다른 제도를 지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기업이 스웨덴으로 진출하면서, 집합적 노사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고, 유럽연합 수준의 노사관계 제도가 기존의 스웨덴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2월 보수연정은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 노동자들의 유입

1) 스웨덴의 유로화 가입이 스웨덴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Campos, Coricelli and Morreti, 2016)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녹색당과 좌파당은 반대를 하였고, 사민당과 중앙당에서는 유로화 가입을 둘러싸고 당내 분열이 발생했다(Petersson, 2016: 3-8).

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보수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보수정당과 녹색당이 찬성하고, 시민당과 좌파당이 반대한 새로운 이민법은 비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들이 더 쉽게 스웨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민당, 좌파당과 스웨덴 노총(LO)는 새로운 이민법이 소셜 덤핑과 기존 노사 관계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이민법을 반대하였다(Local, 2008).

스웨덴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스웨덴은 국내 행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노사관계가 외부 행위자(유럽연합 의회와 법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였던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노사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스웨덴 모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4년 라트비아 건설회사 라발(Laval)이 스톡홀름 근교 뉉스홀름(Växholm) 학교 재건축을 담당하면서 라발은 스웨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복지를 요구하는 스웨덴 건설노조(Byggnads)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건설노조는 재건축 작업을 봉쇄하였다.²⁾ 라발은 스웨덴 건설노조의 파업권이 라발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스웨덴 건설노조를 스웨덴 노동법원(Arbetsdomstolen)에 제소하고, 유럽연합법 위반으로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제소하였다. 최종적으로 유럽법원은 2007년 12월 건설노조가 유럽연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건설노조가 라발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Arbetsdomstolen, 2007). 이 판결은 스웨덴 모델의 핵심인 스웨덴 노사관계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었다(Asteriti, 2012; LO, 2013).

이 논문은 스웨덴이 유럽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라발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라트비아 회사인 라발(Laval un Partneri)과 스웨덴 건설노조와의 분규(Svenska Byggnadsarbetareförbundet) 사례(C-341/05)³⁾에 관한 스웨

2) 단체교섭의 내용은 스웨덴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부담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임금 이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5.9%), 기술훈련비(0.8%), 조합비(1.5%) 등이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되었다(Pettersson, 2010: 12).

3) 2007년과 2008년 네 가지 유사한 사례가 유럽연합 법원에 제소되었다. 라

덴 노동법원과 유럽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노동조합, 정당과 EU 회원국가와 유럽연합의 대응을 중심으로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스웨덴 노조들이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라발 사례는 유럽통합이 내세우는 ‘시장통합’과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 간의 모순과 충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단순화하여, 라발 사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럽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스웨덴의 유럽화와 탈규제

스웨덴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유럽 연합의 법률과 제도가 스웨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가 개별 회원국의 법과 제도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법과 개별 국가의 법이 상이한 경우, 유럽연합 법이 우선한다(European Constitution Article 1-6). 2007년 조인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도 유럽연합 법원의 판례도 개별 회원국 판례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⁴⁾

스웨덴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1996년

발 - 4중주 (Laval-quartet)라고도 불리는 이들 네 가지는 라발 사례를 포함하여, 2006년 독일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폴란드 기업이 독일에서 건설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임금의 46.57%만을 제공하여 발생한 뤼퍼트(Ruffert) 사례, 2007년 핀란드 선박회사인 바이킹(Viking)이 탈린과 헬싱키를 왕래하는 페리호 근무 인원을 에스토니아 노동자로 충원하기 위하여 배 에스토니아에 등록하면서 생긴 바이킹 사례와 2007년 유럽위원회와 룩셈부르크 사이에 생긴 갈등으로 임시과건노동자법의 적용 대상인 아닌 공공정책의 해석을 둘러싼 유럽연합과 룩셈부르크 의회 간의 갈등인 룩셈부르크(Commission vs. Luxembourg) 사례이다. Malberg(2010)와 Woolfson, Thörnqvist and Sommers(2010) 참조.

- 4) 2007년 12월 13일 조인된 리스본 조약 17조는 “유럽연합에 의해서 채택된 조약과 법률은 회원국들의 법률보다우선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자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8:115:0001:01:EN:HTM> 2017년 4월 20일 접속). 그러나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법과 유럽연합법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Bobeck(2014) 참조.

유럽 연합 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화한 ‘임시 파견 노동자법’(Posting Workers Directive, PWD)(EU Directive 96/71/EC)이다. 임시 파견 노동자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이다. 이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 회원국들 내에서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것은 건설업, 제조업, 농업과 각종 서비스업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법이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력의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한다는 유럽 연합의 취지와는 달리 이 법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Eurofound, 2010: 1).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업으로 유럽 연합의 회원국 기업들이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기업들도 다른 회원국 건설시장으로 진출하였다. 회원국 내의 행위자들이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Menz, 2005: 22-62). 그러나 2004년 이전까지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 간 기업 활동과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졌고,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노조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곧바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과 자본 간의 ‘신사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유럽화에 내재된 모순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출발은 경제통합 혹은 시장통합이었다.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6개 국가(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와 독일과 이탈리아)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재편되었다. 1973년 영국, 덴마크와 아일랜드가 가입하면서 회원국 수는 9개국으로 늘어났다. 1989-1991년 냉전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1993년 마스트리히트 협약(Maastricht Treaty)과 1999년 암스테르담 협약(Amsterdam Treaty)을 통해서 유럽 회원국 내 재화, 서비스, 사람과 돈 이동의 자유를 제도화하였다.⁵⁾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스웨덴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5)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인

셴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을 통해서 패스포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실질적인 이동의 자유가 제도화되었다. 2004년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고,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서, 유럽연합은 총 28개 회원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을 내세워,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의식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사회적 유럽’은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고용규제, 완전고용과 같은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통한 유럽 수준의 사회통합을 의미한다(Berthoud and Iacovou ed. 2004). 시장모델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유럽은 연대에 기반을 둔 사회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스웨덴은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1994년 11월 13일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찬성 52.3%, 반대 46.8%, 무효 0.6%로 가까스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었다. 좌파당과 녹색당은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하였고, 보수당과 인민당은 찬성하였다. 사민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었고, 나머지 정당들은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당원 개개인에게 일임하였다. 시민 사회도 분열이 되어, 유럽연합 반대 시민운동(*Folkrörelsen Nej till EU*)과 찬성 시민운동(*Ja till Europa*)으로 양분되었다. 반대 입장은 유럽화로 인하여 스웨덴 고유의 사회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찬성 입장은 유럽의 거대한 시장에 통합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경제적 논리와 사회적, 정치적 논리가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최종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찬성 입장이 과반을 겨우 넘어 유럽연합 가입이 이루어졌지만,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싸고 스웨덴은 양분되었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유럽연합 가입이 위기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확산된 결과였다. 그러나, 2003년 유로화 가입 국민투표에서는 집권 사민당이 찬성을 하였지만, 다수가 반대하여 유로화 가입은 이루어지지 못했

플레이션 비율, 정부 재정, 환율과 이자율에 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Hubbard and Kane, 2013).

다(Tsarouhas, 2016: 363-364).

유럽연합은 서비스의 자유(freedom to service)를 핵심적인 이념으로 내세워 회원국들 간 국내나 국외 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회원국 내의 기업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민이나 제3국의 국민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단, ‘공공정책, 공공안전과 공중보건’이나 ‘공익’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차별이 허용될 수 있다(SOU, 2015: 15-16).

유럽연합의 두 가지 대립적인 속성인 ‘단일 시장’ 대 ‘사회적 유럽’의 대립은 보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경제수준과 사회권 보장 수준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시장경제로 통합되어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노동권과 사회권을 약화시키는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는 소셜 덤핑 현상이 나타났다. 소셜 덤핑은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로기준을 위반하거나 임금수준을 현저하게 낮추는 고용주의 행위이다. 서유럽이나 동유럽 기업들이 건설업, 간병 서비스업, 농업 등에서 동유럽 노동자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저임금을 제공하는 현상에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장통합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두 가지 유럽통합의 상이한 목표는 모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람,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단일 시장에 의해서 실현되었지만, 회원국들 내의 공통의 사회적 기준의 부재가 노동비용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를 낳았다”(AEDH, 2016).

1999년 스웨덴은 외국 기업이 스웨덴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로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노동자법(Posting of Worker’s Act, PWA)’을 도입하였다. 고용주가 스웨덴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나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외국 인력을 파견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시 파견노동자들에게도 단체교섭의 결과가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임금, 노동시장, 유급휴가, 최저 임금, 건강과 안정)이 스웨덴 노동자들의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스웨덴은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저 임금의 기준은 노조들의 단체교섭 결과를 따르게 된다.

2004년 스웨덴에서 첨예하게 대두된 라발 사례(Laval case)는 두 가지 이

념의 충돌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 사례는 임시 파견노동자법의 해석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되었다. 시장의 자유와 노동권이 나 사회적 시민권 간의 충돌은 최종적으로 최상급의 법률 기관인 유럽연합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시장통합을 강조하는 경우,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노동권과 시민권을 강조하는 경우, 시장은 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최상위 법원인 유럽연합법원(ECJ)에 의해서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라발 사례는 독자적인 노사관계와 복지제도를 발전시킨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직면하게 된 유럽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3. 라발(Laval) 사례와 스웨덴 모델

2004년 5월 1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러 스웨덴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동유럽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주자는 33만 명에 달하였으며, 임시 체류자를 포함하면 60만명이 넘었다 (Friberg and Eldring ed. 2013: 12). 또한 임시 체류 노동자도 급증하여, 2013년 7월 1일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 건설업 전체 노동자의 1/5을 차지하게 이르렀다(Ahlberg, 2013). 이들 임시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문제가 기존의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럽연합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면서, 파견 노동자 문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형성된 노사관계의 틀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사회모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Woolfson and Sommers, 2006; Woolfson, Thornqvist and Sommers, 2010).

2004년 5월 라트비아 건설업체인 라발(Laval Un Partneri Ltd.)은 스웨덴 건

설회사로부터 스톡홀름 근교 뉉스홀름(Växholm)의 학교 재건축 하도급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재건축 공사는 라발의 자회사인 발틱 비그(L&P Baltic Bygg)가 담당하였다. 라발은 임시로 라트비아에서 35명의 노동자들을 스웨덴으로 데려와 낮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학교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스웨덴 건설노동조합(Svenska Byggnadsarbetareförbundet, Byggnads)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라발에게 요구하였다. 2004년 7월 라발과 스웨덴 건설노조가 임시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였다. 스웨덴 건설노조는 스웨덴에서 일하는 라트비아 노동자들에게도 단체교섭을 통해서 스웨덴에서 지불되는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스웨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보다 40%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라발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⁷⁾ 2004년 10월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스웨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을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라발은 12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노조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 사이, 라발은 라트비아 노동자들의 65%가 소속되어 있는 라트비아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였다(Asteriti 2012/13).

12월 4일 스웨덴 건설노조는 작업 현장 출입을 막고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법(Svensk lag i Sverige)”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전기 기사노조(Elektrikerna)가 연대 파업을 조직하여 건설노조 파업을 지원하였고, 시멘트를 공급하는 운송 노조원들이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로 인하여 노조들의 봉쇄 한 달 후, 라발은 재건축 현장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라발은 스웨덴 자회사인 발틱 비그의 파산을 선언한 후, 노동자들을 라트비아로 다시 돌려보냈다(Lindstrom, 2011).

라발 사례는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어서, 스웨덴 정부와 라트비아 정부

6) 스웨덴 건설노조는 시간당 임금 145크로나, 월 13,600크로나와 식비와 교통비 포함 6,000크로나를 노동자 임금으로 라발에게 요구하였다. 라발은 시간당 임금 109크로나를 주장하였다(Berg, 2004).

7) 2004년 라트비아 노동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11,846\$로 OECD에서 가장 낮아서, 스웨덴의 노동자들의 연평균 임금의 34.6%에 불과하였다(<http://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 2017년 6월 19일 접속).

도 개입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단체교섭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노조 봉쇄를 옹호하였다. 반면 라트비아 정부는 라트비아 건설회사의 공사가 봉쇄된 것은 차별이라고 비난하였다. LO와 TCO 변호사들은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라트비아 노동자들의 임금이 스웨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Petersson, 2010: 21-22).

정당들 간에도 라발 사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시민당은 이 동의 자유와 서비스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 반면, 보수당과 기독교 민주당은 노조의 봉쇄가 마피아와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중앙당은 값싼 옷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값싸게 건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etersson, 2010: 27-28). 라발 분쟁은 스웨덴 사회와 정치의 균열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라발은 스웨덴 기업총연맹(Svenskt Näringsliv)⁸⁾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을 스웨덴 노동법원에 제소하였다(Svenska Näringsliv, 2009). 그리고 2009년 12월 스웨덴 노동법원은 유럽연합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스웨덴 건설노조와 전기노조가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라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다. 두 노조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라발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550,000크로나를 라발에게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 2백만 크로나도 라발에게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다(Gustafson and Kullander, 2015). 라발은 파산으로 인한 손해로 5백만 크로나를 요구하였으나, 2백만 크로나만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다. 파산으로 인한 나머지 손실 차액 3백만 크로나는 스웨덴 기업총연맹이 라발에게 보전해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라발의 승소로 귀결되었지만, 노동법원 7명의 판사 가운데 3명이 반대했을 정도로, 스웨덴 법조계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Arbetsdomstolen,

8) 스웨덴 기업총연맹은 2001년 기존의 스웨덴 경총(SAF)과 스웨덴산업연맹(SFI)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경영자 단체이다. 스웨덴 기업총연맹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스웨덴 노조의 공사 방해는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venska Näringsliv, 2009).

2007).

유럽연합 법원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서비스의 자유와 기업 설립의 자유가 노동조합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스웨덴 노동법원은 스웨덴 건설노조의 봉쇄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유럽연합법을 위반한 것과 스웨덴의 공동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노동법원은 유럽연합법 위반을 판결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라발이 금전적 손실을 내세워 배상 14만 크로나와 벌금 13만 5천 크로나를 요구하였으나, 라발이 금전적 손실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만 크로나 벌금(건설노조 2만 크로나, 전기노조 2만 크로나, 건설노조 지부 1.5만 크로나)만 부과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기본권이 유럽연합의 기본적인 이념인 시장의 통합을 제약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Rönmar, 2010: 282).

라발 판결은 스웨덴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판결이었다. 작업장 봉쇄를 스웨덴 노동조합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하여,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노총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헌장(European Social Charter)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기도 하였다.

또한 라발 사례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15일 보수 연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Lex Laval)을 통과시켰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법적 대리인을 뒤흔다는 규제를 없앴에 따라서 스웨덴 노조가 외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보수 연정의 유럽법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라발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외국 하청기업과 하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스웨덴 단체교섭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스웨덴 노총(LO) 위원장 토르발드손(Karl-Petter Thorwaldsson)과 화이트칼라 노총(TCO) 위원장 노르드마크(Eva Nordmark)는 즉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라발법을 비판하였다(Council of Europe, 2012). 스웨덴의 개별 노동계약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을 단체교섭제도와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발 사례의 경우는 스웨덴의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노사관계제도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이에 반대했던 것이다. 더구나 스웨덴의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른바 소셜 덤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은 스웨덴 노동법원의 판결이 스웨덴 노사관계 제도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ILO와 유럽사회권 위원회(European Committee on Social Rights)도 스웨덴의 라발법이 노조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공정 노동행위와 사회적 덤핑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노동기구의 협약의 적용과 권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도 라발법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인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기업의 국적 때문에 제약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웨덴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였다(ILO, 2013: 179).

2012년 11월 20일 유럽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도 라발법이 유럽 사회현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LO와 TCO가 공동으로 제출한 라발법에 대한 항의를 검토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두 노총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라발법의 6조 2항은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 기간과 조건을 규제하는 것을 가로막고, 6조 4항은 노동조합원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19조 4항a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19조 4항b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의 혜택을 스웨덴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European Labour Network, 2012).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한 시민당은 스웨덴 법물이 유럽연합 법원의 라발 판결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 위원회가 조직되어 노조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기업총연맹은 스웨덴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유럽연합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 정권과는 달리, 진보 정권은 유럽연합법과 충돌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Ahlberg, 2014b).

4. 라발 사례 이후

유럽연합 법원 판결 3년 후, 스웨덴 보수 연정은 2010년 3월 24일 의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법원의 요구를 반영한 ‘라발법(Lex Laval)’을 통과시켰다. 2010년 4월 15일 발효된 라발법은 ‘임시노동자법(Posted Workers Directive) 조항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고용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고용조건이 단체교섭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거나, 임시 외국인 노동자법에서 제시된 임금이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스웨덴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Ahlberg, 2010). 라발법은 단체교섭 거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파업의 조건으로 고용주가 스웨덴의 기본 노동조건을 위반했는지의 입증 책임을 노조가 지는 것으로 하여 노조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2010년 9월 스웨덴 건설노조는 남부 스웨덴 홀비켄(Höllviken)에 학교를 건설하는 리투아니아 건설업체 메토 줌티(Metto Juntti)가 고용한 리투아니아 노동자들에게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⁹⁾ 그러나 2달 동안 임금체불이 되자, 리투아니아 노동자들이 스웨덴 건설노조에 가입하였고, 5일 간의 단체행동을 통해서 체불 임금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라발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스웨덴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졌다. 스웨덴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과 고용

9) 스웨덴 건설노조와 메티 줌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리투아니아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시간당 158크로나였다.

조건을 제공하는 한, 외국 기업들은 스웨덴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도적으로 단체교섭이 사라진다는 것은 노조의 힘이 그 만큼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Ahlberg, 2010).

스웨덴 노총(LO)과 화이트칼라 노총(TCO)은 라발법이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ILO에 보고하였다. 2013년 ILO는 두 노총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라발법이 ILO 협약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교섭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스웨덴 건설노조의 파업은 스웨덴 노사관계 관행이나 유럽 연합법과 관련하여 정당한 파업이라는 결론 내렸다(ILO, 2013: 179).

2012년 라발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스웨덴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의회 내 정당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 임시노동자위원회(Kommittedirective, Posting Workers Committee)가 만들어졌고, 2014년 정권이 보수 연정서 진보 연정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추가되어 라발법의 효과에 대한 조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최종적으로 2015년 임시노동자위원회 보고서(SOU, 2015: 83)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 노사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시민당과 녹색당 연정은 2017년 7월 1일 라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된 라발법안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노조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부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최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 합의(confirmation agreement)’마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Ahlberg, 2017). 노조가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입증할만한 자료 즉, 고용주가 단체협약의 최소 수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발법 개정안은 ILO와 유럽연합 고용사회권위원회의 비판을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1) 고용주가 단체교섭을 위한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2) 스웨덴 산업 부문 단체협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포함하는 단체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단적인 행동이 허용되어야 하며, 3) 피고용자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스웨덴 노동환경국이 단체협약에서 필요한

노동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SOU 2015: 21-24.). 시민당과 녹색당 연정에 의해서 시도된 라발법의 개정은 보수당 집권 시 강조되었던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럽연합 수준에서도 임시파견노동을 둘러싸고 스웨덴의 라발 사례 이후, 독일의 뤼페르트(Rueffert) 사례, 핀란드의 바이킹(Viking) 사례, 룩셈부르크(Luxembourg) 사례 등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하였다. 점차 임시파견노동자 문제가 빈발하면서, 임시파견노동 문제는 유럽연합의 내적 갈등을 상징하는 이슈가 되었다. 그러므로 1996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임시파견노동자법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제한된 기간’ 동안에서 제한된 기간의 의미와 ‘회원국에서 설립된 기업’에서 기업의 의미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저임금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이 법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Voss, Faioli, Lhernould and Iudicone, 2016: 24-34). 2014년 유럽고용사회권 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016년 유럽위원회가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유럽고용사회위원회는 ‘동일 장소 동일한 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임시파견노동자들을 송출하는 9개 정부가 이에 반대하였다.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개정안은 보수(remuneration), 파견기간, 하청 고리(subcontracting chains) 및 파견회사(temping agency)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Joannin, 2016). 새로운 개정안은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하여 보수는 임시파견노동자 수입국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하고, 파견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주된 계약자의 기준을 하청업체에도 적용하며, 수입국의 임시파견노동자와 송출국의 임시파견노동자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정된 임시파견노동자법은 회원국들 간 이견이 많아서, 2017년 5월 30일 현재 개정안 찬반투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웨덴 시민당은 이러한 개정안이 사회정책까지 포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의 평등뿐만 아니라 복지의 평등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개정안이 통합된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대하고 있다(Eriksson, 2017). 임시파견노동자 문제

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이견이 존재하고, 임시파견노동자 송출국과 수입국 간에도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유럽연합 수준에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5. 결론

유럽연합의 탄생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국가 간 통합을 이루어 낸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들어 낸 중심적인 축은 경제 통합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형성과 확대는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유럽연합의 또 다른 축으로 등장한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 모델은 경제 통합을 넘어서, 민주주의, 연대와 평화를 제도화하고자 한 노력도 포함하였다.¹⁰⁾

임시파견노동자법은 노동, 자본,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럽연합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동유럽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들어오면서, 임시파견노동자법은 유럽연합과 국가 간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서유럽으로 동유럽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곧바로 유럽 각국에서 형성된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제도 내에서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노동시장 통합이 저임금 동유럽 노동자들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소셜 덤핑’을 야기하고 있으며, 외국인 임시파견노동자 수입국의 노동조합들은 교섭력과 조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스웨덴의 라발 사례는 전형적으로 시장 모델에 근거한 유럽화와 기존의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유럽통합에 따른 스웨덴 노사관계의 자율성 약화라는 점에서 유럽통합의 부정적 결과를

10) ‘사회적 유럽’은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 사회적 보호, 불평등 억제, 사회적 대화, 경제적 번영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Giddens, 2006: 15).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다. 기업활동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면서, 국민국가 틀 내에서 형성된 노사관계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같이 높은 조직률을 보여주는 노조, 노동과 자본 간의 단체교섭과 노사갈등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오랜 전통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을 약화시키는 유럽의 경제통합은 스웨덴 노조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현재까지 유럽통합은 노동권과 사회권에 기초한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적 유럽’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시장 통합’을 더 강하게 보여주었다. 유럽연합은 노동권과 사회권보다 시장에서의 자유를 중시하여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과 사회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발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유럽화가 시장통합과 사회통합 간의 균형을 잃게 되면, 유럽화 자체가 ‘바닥을 향한 질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사회들 간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법의 통합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hlberg, Kerstin. 2010. "Will lex Laval Work?" *Nordic Labour Journal*, November 2, 2010.
- _____. 2013. "One in Five Construction Workers in Sweden are Posted," *Nordic Labour Journal*, December 12, 2013.
- _____. 2014a. "Laval case brings new Swedish law," *Nordic Labour Journal*, April 1, 2014.
- _____. 2014b. "The Laval judgement: Swedish government wants more over to unions," *Nordic Labour Journal*, December 4, 2014.
- _____. 2017. "Lex Laval revised in Sweden - to what effect?" *Nordic Labour Journal*, March 1, 2017.
- Arbetsdomstolen. 2007. Dom nr 89/09 Mål nr A 268/04.
- Asteriti Alessandra. 2012. "Social Dialogue, Laval-Style," *European Journal of Legal Studies* 5(2): 58-79.
- Berthoud, Richard and Maria Iacovou ed.. 2004. *Social Europe: Living Standards and Welfare States*, Cheltenham: Edward Elgar.
- Bobeck, Michael. 2014. "The Effect of EU law in national legal system," in *European Union Law*, ed. by Catherline Bernard and Steve Pe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6-225.
- Campos, Nauro F., Favrizio Coricelli and Luigi Morreti. 2016. Sweden and the Euro: The Neglected Membership of Euro, *European Policy Analysis* November Issue, 2016.
- Dølvik JE, Visser J (2009) Free movement, equal treatment and workers' rights: Can the European Union solve its trilemma of fundamental principl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40(6): 491 - 509
- Eriksson, Aleksandra. 2017. "EU parliament delays a posted workers vote," *EUobserver* June 1, 2017.
- European Court of Justice. 2017. *Judgment of Court Case C-431/15*.

- Friberg, Holgen and Line Eldring(ed.). 2013. *Labour migrants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the Nordic countries Patterns of migration, working conditions and recruitment practices*, Copenhagen: Norden.
- Giddens, Anthony. 2006. "A social model for Europe?" Ch. 1 in *Global Europe, Social Europe* ed. by Anthony Giddens, Patrick Diamond and Roger Liddle, Cambridge: Polity Press.
- Hubbard, Glenn and Tim Kane. 2013. *Balance - The Economics of great powers from ancient Rome to modern America*, New York: Simon & Schuster.
- ILO. 2013.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Geneva: ILO.
- Joannin, Pascale. 2016. "The reform of posted workers directive," *European Issues* No. 406.
- Lindstrom Nicolle. 2011. "Constitutionalism between normative frameworks and the socio-legal frameworks of societies," in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nstitutionalism after the Treaty of Lisbon* ed. by Dagmar Schiek, Ulrike Liebert and Hildegard Schnei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4-94.
- Local. 2008. "Sweden approves new labour immigration law" *The Local*, 2008년 12월 12일.
- Malberg, Jonas. 2010. *The Impact of the ECJ Judgment on Viking, Laval, Ruffert and Luxembourg on the Practic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Action*, Policy Department A: Economic and Scientific Policy, European Parliament.
- Menz, Georg. 2005. *Varieties of Capitalism and Europeanizati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to the Single European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terson, Lars Olof. 2000. *The European Debate in Sweden, Notre Europe Research and Policy Paper*, Number 12.
- _____. 2010. Vitbok Laval - Vad hande egentligen i Vaxholm?

- Rönmar, Mia. 2010. "Laval returns to Sweden: The Final Judgment of the Swedish Labour Court and Swedish Legislative Reforms," *Industrial Law Journal* 39: 280-287.
-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2015. *Review of Lex Laval*, SOU: 2015: 83.
- Svenska Näringsliv. 2009. 'Facken får betala skadestånd till Laval', 2December2009.
- Thornqvist, Christer. 2015. "Welfare States and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of Self-Employed Migrant Workers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31: 4, 391-410.
- Tsarouhas, Dimitris. 2016. "Sweden," in *The Palgrave Handbook of Social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ed. by Jean-Michel De Waele, Fabien Escalona and Mathieu Vieira,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347-371.
- Woolfson, Charles, Christer Thornqvist and Jeffrey Sommers. 2010. "The Swedish model and the future of labour standards after Laval,"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41:4, pp. 333-350.
- Woolfson, Charles and Jeffrey Sommers. 2006. "Labour Mobility in Construction: European Implications of the Laval un Partneri Dispute with Swedish Labour,"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2: 1, pp. 49-68.
- Voss, Eckhard, Michele Faioli, Jean-Philippe Lhernould and Feliciano Iudicone. 2016. *Posting of Workers Directive -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IA/A/EMPL/2016-07.

<인터넷 자료>

- AEDH(Association Européene pour la defense des droit d'Hommes) . 2016. The battle against social dumping, mirror of European disunity? (<http://www.aedh.eu/The-battle-against-social-dumping.html> 2017년 6월 12일 접속).

- Berg, Annika. 2004. "Dispute over pay of Latvian construction workers," *EurWork* December, 2004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articles/dispute-over-pay-of-latvian-construction-workers>, 2017년 4월 5일 접속).
- Eurofound. 2010. "Laval Case," *EurWork* 29 November 2010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industrial-relations-dictionary/laval-case>, 2017년 4월 5일 접속).
- European Labour Network. 2012. "Decision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in relation to Lex Laval, the Swedish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Laval and Viking judgments of the ECJ," (http://www.labourlawnetwork.eu/national%3Cbr%3Elabour_law/national_legislation/legislative_developments/prm/109/v__detail/id__3707/category__1/index.html 2017년 4월 27일 접속).
- LO. 2013. "ILO: Swedish Laval Legislation Violates Freedom of Association," (http://www.lo.se/english/news/ilo_swedish_laval_legislation_violates_freedom_of_association, 2017년 4월 5일 접속).

<Abstract>

Europeanization and Industrial Conflict in Sweden: Focusing on the Laval Case

Shin, Kwang-Yeong*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between Laval, a Latvian construction company, and Byggnads, the Swedish Construction Un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conflict between market integration by the membership of European Union (EU) and Swedish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e Laval case reveals the negative impact of the Posted Workers Directive by European Union on the Swedish Model with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social partners and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It also shows the dilemma of Europeanization symbolized by strong 'market integration' and weak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Laval, posted workers, Swedish industrial relations, European Union, social dumping.

*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성명: 신광영

소속: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mail: kyshin20@gmail.com

논문 접수일: 2017.6.4.

수정원고 접수일: 2017.6.24.

논문심사 완료일: 2017.6.18.

게재 확정일: 2017.6.24.